2025 「생물 활성 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」 시업 기업지원 공고

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「생물 활성 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」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02월 24일

(사)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장 (재)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(재)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

1 지원개요

- □ 사업명 : 생물 활성 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사업
- □ **사업목적** : 생물 활성 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*를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시장 진출 촉진
 - * 천연물, 세포, 미생물, 효소 등에서 유래한 바이오소재 및 이를 통한 기질의 반응생성물 소재(본 시업에서는 국내 개발 또는 국산화가 완료된 소재를 대상으로 함) 및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, 기능성 표시식품, 특수의료용도용 식품(메디푸드), 일반식품 등
- □ **신청자격**: 생물 활성 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제품화 및 양산화를 통해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 · 중견기업
 - * 대상 소재 범위
 1)국내 연구·개발이 완료된 생물 활성 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
 2)수입에 의존하는 생물 활성 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에 대한 국산화 완료 소재
 ** 대상 제품: 1)건강기능식품 2기타 활용 제품기능성표시식품, 특수의료용도식품, 일반식품 등
 - ※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※ 공정거래법상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」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

2 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

- 1) 건강기능식품, 기능성표시식품 등 제품화·양산화 패키지 지원(약 1억원 상당)
- 2) 특수의료용도식품(메디푸드) 제품화·양산화 패키지 지원(약 0.6억원 상당)
- 3) 국내 시설 및 제품 인증 지원(0.15억/건)
- 4) 해외 수출 연계 기술 · 사업화 컨설팅 지원(0.15억/건)
- 5) 상기 지원기업의 제품 시장진출 지원
- * 중복지원 가능하나. 신청서류 제출 및 BSMS 시스템 접수는 분야별로 별도 접수 해야함
- □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5. 10. 31.

□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

지원분야	지원규모	지원기업	지원내용	지원기관	
제품화 및 양산화 패키지 지원	취대 1어	37ዘ사	• 제품화 및 양산화 패키지지원	(재)전북비이오 융합산업진흥원	
(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표시식품 등)	최대 1억	2개사	- 제품화 샘플 제작 지원 - 제품명/브랜드/디자인 제작 지원 - 제품인증 또는 등록지원 - 양산품 품질관리체계 수립	(재)춘천바이오 신업진흥원	
제품화 및 양산화 패키지 지원 (특수의료용도식품)	최대 0.6억	47ዘ사	(제품표준서, 제조지시기록서 등) 지원 - 초도 양산 비매품 제작 지원	(사)한국바이오 특화센터협의회	
국내 인증 지원	최대 0.15억	2개사	• 국내 시설 및 제품 인증지원 - kGWP, HACOP, ISO 등 국내인증지원	(사)한국바이오 특화센터협의회	
해외수출 컨설팅	최대 0.15억	2개사	•해외 수출연계 기술·사업화 컨설팅지원 - 기술·사업화 부분 각분야 컨설팅 지원	(사)한국바이오 특호센터협의회	
제품 시장진출 지원 (필수사항)	• 전시회 7 - 2025 Pa (5/29*31 • 협력 네! - 기업·전 - 정보교	(사)한국바이오 특호센터협의회			

- * 사업비 직접지급이 아닌 지원기업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(패키지지원사업-자부담 10%이상 부담 필요)
- ** 실제 지원규모는 최대지원범위 내에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

□ 지원 상세내용

1) 제품화 · 양산화 패키지 지원

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방식	지원기관
제품화 및 양산화 패키지 지원	•제품화 및 양산화 패키지지원	지원기관 직접지원	(재)전북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
(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표시식품 등)	- 제품화 샘플 제작 지원 - 제품명/브랜드/디자인 제작 지원 - 제품인증 또는 등록지원	시전기진 학합시전	(재)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
제품화 및 양산화 패키지 지원 (특수의료용도식품)	- 양산품 품질관리체계 수립 (제품표준서, 제조지시기록서 등) 지원 - 초도 양산 비매품 제작 지원	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매칭을 통한 공급기관 직접지원*	(사)한국바이오 특화센터협의회

*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공급기관 소개자료 및 견적서 첨부 필수

○ 제품화·양산화 지원 프로세스

제품화 샘플 제작 지원		제품명/브랜드/ 디자인 지원		품질관리체계 수립		제품인증		초도 양산(비매품) 제작
수혜기업별 맞춤형 제품 및 제형개발	->	제품 컨셉에 따른 브랜드화	- >	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검증	->	품목제조보고 (원료, 기능정보, 표시사항 등)	->	참여기관 장비활용 시제품 생산
		제품화 지원				양산호	ト지	원

- ① 지원기업의 기능성 식품 원료 소재 활용 제형개발 및 샘플제작
 - 원재료의 가공 또는 기능성 원료 소재의 활용 방법에 따른 공정 개발
 - 정제, 캡슐, 액상, 스틱 등 제형에 따른 제품 샘플 제작
- ② 샘플 제작완료에 따른 제품명/브랜드/포장디자인 제작 지원
 - 소재의 타켓 기능성에 따른 제품 스토리텔링 및 브랜드네이밍
 - 기능성 성분의 하루 섭취량에 근거한 용법, 용량 결정에 따른 제품 포장 단위 및 컨셉 결정
 - 내포장재, 외포장재 등의 포장 디자인 지원 및 원부자재 생산
- ③ 제품 양산을 위한 품목제조신고 지원
 - 제품명, 배합비, 제조공정 확립 등 품목제조신고 및 제조원 지정
- ④ 제품의 품질관리체계 확립 지원
 - 샘플 제작 시 제조지시기록서 작성 및 구성 방법 지원
 - 원료, 자재, 반제품, 완제품 공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 및 제공

- 제조지시기록서를 바탕으로 한 제품표준서 제작 지원
- ⑤ 초도 양산 비매품의 제작 지원
 - 원료, 자재 등의 구입 및 비매품 생산을 위한 전 제작 공정 지원
- ⑥ 일부 제형의 경우 개별 영리기업을 통한 OEM 생산 지원 가능

4) 국내 시설 및 제품 인증 지원

- 기업의 제품화 및 인증을 위한 국내 인증 지원
- kGMP, HACCP, ISO 등 국내 인증 지원
- 국내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

5) 해외 수출 연계 기술 · 사업화 컨설팅 지원

- 기업의 해외 수출에 필요한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
- 기술 또는 사업화 부분의 각분야 컨설팅 지원 가능
- 해외 수출에 관련한 컨설팅 및 실적 증빙 필요

6) 상기 지원기업의 제품 시장진출 지원

- ① (전체대상) 전문 전시회 공동개최를 통한 사업화 지원
 - 2025 Reha Homecare 바이오헬스케어산업전 참가 독립된 조립부스 지원 * (5/29~31, 서울 코엑스, 전시회기간 중 전시 부스 상주 필요)
 - 첨단 바이오 소재 해외 수출지원 및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
 - 국내 전시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지원
- ② (전체대상) 협력 네트워크 지원
 - * 기업당 1명이상 필수 참석 필요
 - 사업설명회, 간담회·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확대
 - 2025 사업성과보고회 개최 및 성과물 홍보전시 진행
 - 유망 기술 및 소재에 대한 동향 보고서 작성 및 공유

※ 신청 유의사항

- 1) 신청기업의 생물 활성 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는 국내 개발원료로서 지적재산권 이나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원료이어야 함
- 2) 제품화 · 양산화 이후 판매용 제품 생산은 기업 자부담임
- 3)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,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,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,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,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보유한 기업
- 4) 사업비 직접 지급이 아닌 지원기업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(자부담 10% 이상 부담 필요)
- 5) 지원내역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하며, 지원금은 선정기업으로 직접지급 불가, 사업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주관참여기관이 기술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임
- 6) 선정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에 따른 사업에 필수 참석(전시회, 설명회, 간담회 등)
- 7) 예상 사업 경쟁률 미달 시 공고 기간 연장 가능
- 8) 지원사업 종료 후 3년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3 │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2025. 02. 24.(월) ~ 03. 17.(월) 16:00 (시간엄수)
- 신청방법: https://www.bsms.or.kr/ 홈페이지 신청
- 접 수 처: https://www.bsms.or.kr/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시스템 접수
- O 문 의 처

구분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(사)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	김예슬	010-7238-7448	ye_seul22@kbcluster.or.kr
(재)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	송대길	010-8977-8533	sdk1125@jif.re.kr
(재)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	정명훈	010-9260-5492	myunghoon@cbf.or.kr

※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질의 및 업무시간 외 문의는 지양합니다.

☐ 추진일정 (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공고		접수	서류 심사		발표 심사	결과 통보	협약 체결	지원 수행		결과 제출
02.24 ~03.17	合	02.24 ~03.17	03.18 ~03.19	\Box	03.20 ~03.21	03.24	04.01	~10.31	合	11.01

□ 제출서류

1	사업계획서(신청서)	8	기타 기업서류
2	중복지원금지 확약서	1)	사업자등록증
3	개인정보 활용 동의서	2) 4	대보험 가입자 명부
4	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,	최근 3년간 재무제표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
5	기업현황카드		지원기업 회사소개서, 브로슈어 등 공급기관 견적서
6	자부담금 납입 확약서	7) =	공급기관 회사소개서
7	자가진단표	8) 2	기타 증빙 서류 등

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

□ 평가방법

- 서류심사(1차): 지원분야, 신청자격,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
- 발표심사(2차): 지원기업 PT 발표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
- □ **발표심사절차** : ① 지원기업 PT 발표 → ② 질의·응답

① 지원기업 PT 발표		② 질의·응답
10분	7	10분

- □ **평가기준** : 적합성, 내용 및 범위, 필요성, 기업역량, 기대효과 등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 합산
- □ **결과발표** :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선정결과는 BSMS 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

평가기준 및 평가표

평가 항목	세 부 항 목	배점	평 가 지 표	평 점				
1. 사업화 역량	기업신용도 평가	10	신용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e-3 A- A2- A- 이상(10점) e-4 BBB A3- BBB- 이상(8점) e-5 BB- B0, BB- 이상(6점) e-5 BB- B0, BB- 미만(4점)					
(20)	기업인증	10	- 벤처기업, 유망중소기업, 부설연구소(전담부서), ISO, 지식재산권 등 - 2개(1점), 4개(3점), 6개(5점), 8개(7점), 10개 이상(10점)					
	개발기술의 우수성	10	- 국내외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정도					
a 기스 서	파급효과	10	-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					
2.기술성 (40)	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	10	- 개발기술의 신규성 -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					
	기술개발추진 전략의 적정성	10	- 기술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절성					
	개발기술의 신규성	10	- 신규소재 활용을 통한 제품화 추진 가능성					
- 110111	사업화추진 전략의 적정성	10	- 판로개척 가능성 - 판매전략의 적정성 및 실효성 정도					
3. 사업성 (40)	개발제품 시장전망	10	- 시장규모 및 수익성 - 시장진입 및 수출 확대 가능성 정도 - 제품의 경쟁력 확보 전략의 적절성 정도 - 신규고용, 매출 및 수출에 관한 구체적 계획 여부					
	사전준비성	10	- 기초데이터, 특허 등 신청과제 관련 사전준비정도					
4. 우대사항	우대사항	6	- 최근 3년이내 해외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- 2건(2점), 4건(4점), 6건(6점)					
(10)		4	- 여성, 장애인, 사회적, 녹색 기업 각(1점) 최대(4점)					
	 ◎ 평가기준 : 편	평가점수	* 70점 미만 과락 합 계	점				
평가의견								

심사일 2025년 월 일	평가위원	(인)
---------------	------	-----

5 기타 유의사항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. 또한, 지원 대상기업 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포기 시에도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지원금액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업의 추진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내용 사전검토 후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변경 가능
-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,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
- 사업협약시 자부담금 납입후 협약진행
- 지원계획서 내 정성적·정량적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를 작성
-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

□ 지원제외 대상

-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
-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
- 지원 분야 및 지원내용이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,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 (보고서 제출,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
 - ※ 기업, 기업대표, 총괄책임자 포함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 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
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), 금융 및 보험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